

의안번호	2217846
의 회 인	이언주 의원
회 답 일	2026. 6. 19.
추계번호	26A1819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0조제4항(광해방지의무자의 책임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광해방지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여 광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우선 부담하여 광해방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이 경우 산업통상부 장관은 우선 부담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해방지의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음	재량규정
2	안 제15조의2(광해방지사업의 부실 측정)	- 산업통상부장관과 광해방지사업을 위탁받은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광해방지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별점을 주어야 함(제1항) - 전문광해방지사업자 - 전문광해방지사업자에게 고용된 광해방지기술인 -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별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그 별점을 종합관리하고,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준 별점을 공개하여야 함(제3항)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별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의무규정
3	안 제26조제2항(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일(日) 단위로 산정한 가산금을 징수함</u>.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광업시설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음	의무규정
4	안 제46조제2항(권한의 위임 및 위탁)	산업통상부장관은 <u>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10조제4항(광해방지의무자의 책임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5조의2(광해방지사업의 부실 측정)	
3	안 제26조제2항(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	
4	안 제46조제2항(권한의 위임 및 위탁)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광산피해(이하 “광해”)를 방지하고, 광해방지사업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0조제4항) 광해방지의무자가 법 제10조제2항1)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여 광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비용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우선 부담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하고, 우선 부담한 비용을 광해방지의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광해방지의무자는 사업계획에 따른 광해방지 등의 사업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기업 규모, 사업의 종류 등에 따라 사업비의 20~100%²⁾임

1) 제10조(광해방지의무자의 책임 등) ②광해방지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한 비용을 부담한다.

1. 사업계획에 따른 광해방지
2. 휴광 및 폐광 당시에 발생된 광해의 방지
3. 폐광 후 발생하는 광해의 방지와 이를 위한 광해방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4. 그 밖에 광산개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광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는 비용) 법 제10조제2항제1호의 사업계획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경우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이나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 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인 광해방지의무자: 100분의 20

- 가행·휴지광산이거나 2006년 이후 폐광 후 3년 이내의 폐광산의 경우 광해방지의 무자가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광산의 광해방지의무자가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한국광해공업공단 위탁)가 직접 시행함
- 또한, 2006년 이전 폐광산이거나 2006년 이후 폐광 후 3년이 지난 광산, 광해방지의무자가 사망·도산한 광산의 경우에는 산업통상부가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함
- 산업통상부는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2026년 9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함

※ [참고자료] 광해방지사업의 실시 주체와 비용 부담 구조

[표 1] 산업통상부 ‘광해방지사업’ 주요 내용

세부사업 (회계, 코드)	주요내용	사업시행주체 (사업시행방법)	예산(백만원)	
			2025	2026
광해방지사업(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 5440-302)	광산개발에 따른 환경피해의 적정 관리와 확산 방지를 통한 국민 안 전 보장, 산업원료(석회석, 철광 등)의 안정적 공급 및 광산 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한국광해광업공 단(출연)	88,000	92,000

자료: 산업통상부

- 안 제10조제4항은 법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광해방지의무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광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광해방지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추후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 경우 국가의 추가재정소요 발생여부 및 규모는 구상권 행사에 따른 비용 회수 가능 여부와 회수 규모,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그러나 현 시점에서 추후 구상권 행사에 따른 비용 회수 여부와 회수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함

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기업”이라 한다)인 광해방지의무자: 100분의 30

다. 그 밖의 광해방지의무자: 100분의 40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비의 100분의 100

가. 산림복구사업

나. 토지복구사업

다.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및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 당시 비용 전액을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광해방지사업

- (안 제15조의2) 산업통상부장관과 광해방지사업을 위탁받은 공단은 광해방지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부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의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별점을 부여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별점을 종합관리하고 별점을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사업이 실시될 수 있어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산업통상부는 법 제29조³⁾에 따라 광해방지의무자, 광해방지사업자, 광해방지시설의 소유자 또는 설치자 등에 대해 보고·출입·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부실(우려) 사업자에게 별점을 부과하고 관리할 경우 현행 업무가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실시될 수 있음
 - 이 경우 사업 수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소요 비용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가 불충분하여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불가능함
- (안 제26조제2항) 체납된 광해방지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산정방식을 현행 ‘고정액+월 단위 산정’ 방식에서 ‘일 단위 산정’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가산금 수입이 감소할 수 있으나, 개정안에서 가산금 산정시 적용 이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향후 발생할 체납건별 체납액, 체납기간 등의 예측이 곤란하여 현 시점에서 합리적 추계가 불가능함
 - 참고로, 최근 5년간 광해방지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징수현황은 다음과 같음

3) 제29조(보고 및 검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광해방지의무자, 광해방지사업자, 광해방지시설의 소유자 또는 그 시설의 설치자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소 그 밖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에 관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검사에 관한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 2] 광해방지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부과건수	부과금액	가산금 징수액 (징수율)
2021	426	147	6 (4.1%)
2022	469	163	5 (3.1%)
2023	493	175	2 (1.1%)
2024	250	71	0.4 (0.6%)
2025	335	80	0.4 (0.5%)

자료: 산업통상부

- (안 제46조제2항) 산업통상부장관이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현행 ‘실적증명서 발급,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신청, 경력증명서의 발급 등과 관련된 업무’에서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로 변경할 경우 위탁 업무가 확대될 수 있으나, 업무 위탁 대가는 위탁하는 업무의 성격, 범위, 내용 등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현재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려워 추계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및 재정수입 감소분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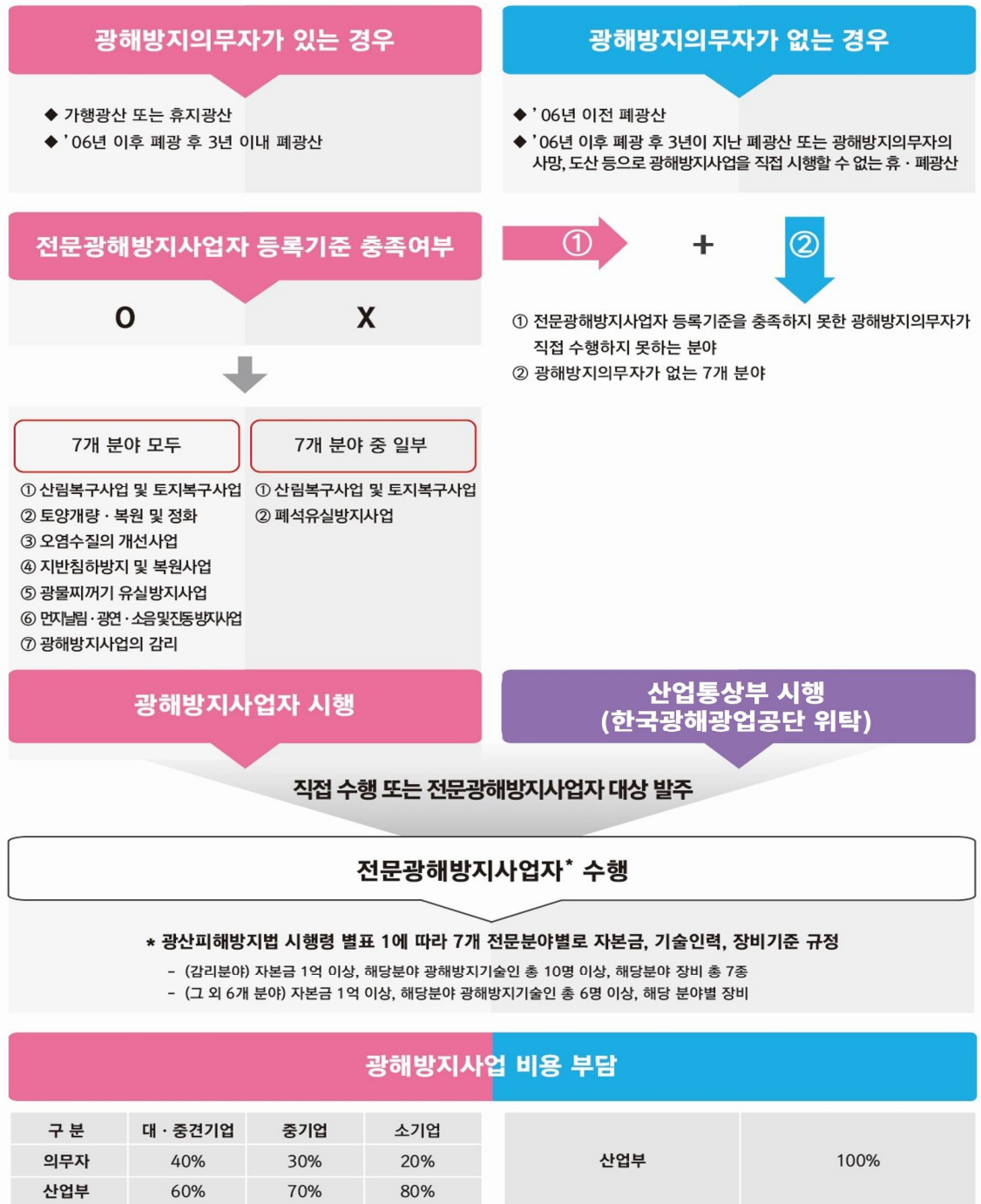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박선아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선아	02-6788-4652	sunapark@nabo.go.kr

[참고자료] 광해방지사업의 시행 주체와 비용 부담 구조



자료: 산업통상부